

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·운영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·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”

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
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소년위원회등의
설치·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
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“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라 함은 법 제13조
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.
- 2.“파주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라 한다)”라 함은 법 제
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.
- 3.“파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라 함은 법 시행령
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.
- 4.“파주시차세대위원회(이하 “차세대위원회”라 한다)”라 함은 청소년
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.
5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
을 말한다.

“제4장(제21조 내지 제23조)”을 “제5장(제26조 내지 제28조)”으로 하고 제4장(제21조 내지 제25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파주시차세대위원회

제21조(차세대위원회)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 (이하 “차세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2조(구성) ①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, 학교장,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재학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.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⑤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23조(임기) ①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24조(기능)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 또는 다른기관, 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
2. 도 및 다른 시·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
3.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
4.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제25조(회의) ①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(종전 제21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수당 등)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 ☎940-4423
입안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청소년담당	김 준 래
	담 당 자	이 경 훈

신 · 구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u>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·운영 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</u> 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의 위촉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제2조(정의) ①“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”라 함은 <u>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.</u> ②“청소년지도위원”이라 함은 <u>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.</u> ③“청소년지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라 함은 <u>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.</u>	<u>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 설치운영조례</u> 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·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u> 1.“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라 함은 <u>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.</u> 2.“파주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라 한다)”라 함은 <u>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.</u> 3.“파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라 함은 <u>법 시행령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.</u> 4.“파주시차세대위원회(이하 “차세대위원회”라 한다)”라 함은 <u>청소년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.</u> 5.“청소년”이라 함은 <u>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.</u>

신 · 구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<u>제4장 파주시차세대위원회</u> <u>제21조(차세대위원회)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 (이하 차세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 <u>제22조(구성) ①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, 학교장,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재학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</u> <u>②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.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 <u>③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 <u>⑤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</u> <u>제23조(임기) ①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 <u>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u> <u>③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u>

신 · 구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	<u>제24조(기능)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u> <u>1. 시 또는 다른기관, 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</u> <u>2. 도 및 다른 시·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</u> <u>3.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</u> <u>4.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</u> <u>제25조(회의) ①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.</u> <u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
제4장 보 칙	제5장 보 칙
<u>제21조(위원회 및 협의회 지원)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지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제22조(준용) (생략) 제23조(시행규칙) (생략)	<u>제26조(수당 등)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 실행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제27조(준용) (현행 제22조와 같음) 제28조(시행규칙) (현행 제23조와 같음)

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·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조례명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약하여 “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”로 수정하였으며
-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.(안 제21조)
- 위원은 시장, 학교장,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.(안 제22조제1항)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22조제3항, 제4항, 제5항)
-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함.(안 제24조)

-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(안 제25조)
- 차세대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 여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6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정책의 수립·집행·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2000. 6. 17일 “경기도차세대위원회”가 출범하였으며,
- 또한, 시·군차세대위원회 설치지침이 경기도로부터 시달(2000. 7. 20)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(경기도 31개 시·군중 고양시외 16개 시·군이 동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일부 시·군은 차세대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를 기 제정하였음)

나. 내용타당성

- 다만, 시·군 차세대위원회 설치지침의 위원회 구성중 위원수를 최고 20명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는바,
- 동 개정조례안 내용중 차세대위원회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정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